#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정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457

발의연월일: 2021. 4. 13.

발 의 자:김정호·김윤덕·박상혁

신정훈 · 정춘숙 · 임종성

정필모 · 서동용 · 전재수

허종식 • 이병훈 • 윤후덕

의원(12인)

### 제안이유

현행법은 농지는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갖고 있으나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(LH) 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불거짐에 따라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규제 강화 및 농지의 공공재적 성격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농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.

이에 국가의 식량주권보호 의무 추가, 농지의 소유와 취득 및 처분 규정 강화, 농지 관련 불법행위 처벌 강화를 비롯해 농지전용 및 농지 보전부담금 의제 조항 강화, 농지의 소유 및 이용 실태 전수조사 의무 화 등을 추진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농지에 대한 투기 를 근절하고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함.

### 주요내용

- 가. 농업인의 농업법인 출자액 및 업무집행권 확대(안 제2조제3호)
- 나. 국가 등의 의무에 농산물 및 식품공급 자급목표 달성 포함(안 제4 조제1항 개정 및 후단 신설)
- 다. 상속 및 주말·체험 농지 소유 제한(안 제6조제2항제3호 삭제)
- 라.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 농지관리위원회 심의(안 제8조제1항)
- 마. 농업경영계획서 준수 의무 및 변경 시 신고 의무화(안 제8조의3신설)
- 바. 상속 농지 관리 강화(안 제8조의4 신설)
- 사. 농업법인의 부동산업 및 농지 불법 중개·광고 행위 금지(안 제8조의 5 신설)
- 아. 농지 처분 제한 및 제한 예외 사항 명시(안 제9조의2 신설)
- 자. 비농업인의 농지 처분 사유 수정(안 제10조의제1항제4호 삭제)
- 차. 처분명령의 유예(안 제12조제1항제1호)
- 카. 농지이용계획 수립 시 해당 도시·군 관리계획 반영(안 제14조제4 항 후단 신설)
- 타. 농지 소유 세분화 처분 금지(안 제22조제2항)
- 파. 농업법인 부동산업 및 임대업 영위 시 과징금 부과(안 제22조의2 신설)
- 하. 개인 농지 중 3년 이상 자경한 농지 등에 한해 농지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허용(제 23조제1항제5호 및 제6호)

- 거. 타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개정 금지(안 제34조제1항제1호 개정 및 제34조의2 신설)
- 너. 농지전용신고 조건 강화(제35조제1항)
- 더. 타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허용 금지(안 제38조제6항제4호 개정 및 제38조의2 신설)
- 러.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(제4절 신설)
- 머. 농지 소유 및 이용 등에 관한 전수조사 의무(안 제5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)
- 버. 농지 불법취득 벌칙 상향(안 제5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신설)
- 서. 농업법인 부동산업 영위 시 벌칙(안 제58조제1호의2 신설)
- 어. 농지 불법 취득 중개 및 중개업소 광고행위 벌칙 신설(안 제59조 제1호 신설)
- 저. 농지 불법임대 벌칙 강화(안 제59조제2호 신설 및 제60조제2호 삭제)
- 처. 이행강제금 강화(안 제62조제1항)

#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 중 "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"을 "농업인이 출자한 출자액의 합계가 그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며 농업회사법인을 대표하는 자가 농업인이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중 3분의 2"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"지방자치단체는 농지에"를 "지방자치단체는 「농업·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7조에 따른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농지를 확보 및 유지하여야 하고, 농지에"로 하 고,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농지의 확보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6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.

제7조제3항을 삭제한다.

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발급받아야 한다"를 "발급받아야 하며, 시·구·읍·면의 장은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"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"제6조제2항제1호 ·제4호"를 "제6조제2항제1호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

분 단서 중 "제6조제2항제2호·제3호"을 "제6조제2항제2호"으로 한다. 제8조의3부터 제8조의5까지 및 제9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8조의3(농업경영계획서 준수 및 변경) ①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여 농지를 취득한 자는 그 계획서를 준수하여 해당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여야 하며, 농지를 분할하여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- ② 농업경영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농업경영변경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·구·읍·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  - ③ 시·구·읍·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농업경영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.
- 제8조의4(상속 농지의 관리) ①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. 다만,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그 기간을 9개월로 한다.
  - ② 제1항의 기간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는 그들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경우에 한정하며, 그지정되거나 선임되는 날부터 계산한다.
  - ③ 제1항의 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농지 소재

지 관할 시 · 구 · 읍 · 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- 제8조의5(금지행위)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- 1. 농업법인의 설립 및 해산의 반복을 통하여 「통계법」 제22조제1 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 업을 영위하는 행위
  - 2. 제6조에 따른 농지 소유 제한이나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하도록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또는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
- 제9조의2(농지 처분 제한) 제8조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해당 농지를 처분하여서는 아니된다.
  - 1. 「병역법」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
  - 2.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
  - 3. 질병, 취학,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농지를 계속해서 소유하기 어려운 경우

제10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.

제12조제1항제1호 중 "해당"을 "농업경영계획서에 따라 해당"으로 한다.

제14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특별시장・광역시장 또는 시장・군수는 「국토의 계획 및

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·군관리계획에 농지이 용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.

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「농어촌정비법」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는"을 "농지는"으로 한다.

제3장제1절에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2조의2(과징금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법인이 농지를 이용하여 부동산업 또는 임대업을 영위한 경우 그 양도 차액 또는 임대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3조제1항제5호 중 "농지를 주말·체험영농을 하려는"을 "농지를 주말·체험영농(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하려는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6호 중 "소유하고"를 "취득하여 3년 이상 자경하고"로 한다.

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"다음"을 "해당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자경하여야 하고 다음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"다른"을 "별표 1에 규정된"으로 한다.

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4조의2(농지전용허가의제에 관한 특례의 제한) ① 농지전용허가의 의제는 이 법 또는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별표 1에 규정된 법률

- 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.
- ②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별표 1은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.

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"대통령령으로"를 "해당 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"로 한다.

제38조제6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4.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서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을 정하는 경우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제38조의2(농지보전부담금 면제에 관한 특례의 제한) ① 농지보전부담 금의 면제는 이 법 또는 제38조제6항제4호에 따른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.
  - ② 제38조제6항제4호에 따른 별표 2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.

제4장에 제4절(제50조의2부터 제50조의4까지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 제4절 농지관리위원회

제50조의2(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) ① 농지의 소유·이용 및 보전 등에 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(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,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)·구(도농 복합

- 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) 읍 또는 면에 농지관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-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역의 특성과 농지분포의 실태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로 인접한 2이상의 시·구·읍 또는 면에 둘 이상의 위원회를 두게할 수 있다.
- 제50조의3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 - ② 위원 과반수는 관할구역에서 5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구성한다.
  -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50조의4(위원회의 업무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 - 1. 농지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실태조사
  - 2.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의 심사
  - 3. 제34조, 제35조, 제36조 및 제36조의2에 따른 허가 신청 또는 신 고에 대한 심사
  - 4. 그 밖에 농지의 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제5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검사·조사 및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"

를 "실태조사의 주기, 방법 및 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"로 한다.

-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모든 농지에 대하여 농지의 소유, 거래, 이용 및 보전 등에 관한 필지별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적 으로 시행하여야 한다.
-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농지관리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.

제57조제1항 중 "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"을 "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"으로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자
- 2. 제6조에 따른 농지 소유 제한이나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

제58조제1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의2. 제8조의5제1호를 위반하여 농업법인의 설립 및 해산의 반복을 통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행위

제59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제8조의5제2호를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하도록 권유·중개하거나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를 광고하는 행위를 한 자
- 2.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유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한 자

제60조제2호를 삭제한다.

제62조제1항 중 "자에게"를 "자 및 제42조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"로 하고, "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"를 "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과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법률」에 따른 감정가격 중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"로 한다. 별표 1 및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각각 신설한다.

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농지전용허가 의제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한 경우에는 제3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별표 1에 규정된 것으로 본다.

제3조(농지보전부담금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한 경우에는 제38조제6항제4호 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별표 2에 규정된 것으로 본다.

#### [별표 1]

별표 1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(제34조제1항제1호 관련)

- 1. 「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」 제26조에 따른 사업계획 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
- 2. 「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」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
- 3. 「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7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
- 4. 「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
- 5. 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
- 6. 「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8조의2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 또는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허가
- 7. 「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·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 법」 제14조제6항에 따른 설치계획의 공고
- 8. 「골재채취법」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
- 9. 「공공주택특별법」 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·변경승인 및 같은 법 제35조제1항·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
- 10. 「과학관의 설립・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제1항에 따른

사립과학관의 설립계획의 승인

- 11. 「관광진흥법」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
- 12. 「광업법」 제42조제1항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
- 13. 「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」 제52조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
- 14. 「국제경기대회 지원법」 제2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 경승인
- 15. 「국방·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
- 16. 「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13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승인
- 17. 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」에 따른 특화특구계획의 승인
- 18. 「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3에 따른 시행계획의 고시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수질개선사업계획의 승인
- 19. 「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의 수립
- 20. 「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3에 따른 시행계획의 고시 또는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수질개선사업 계획의 승인

- 21. 「농어촌도로정비법」 제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 및 공고
- 22. 「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16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
- 23. 「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」 제5조제2항에 따른 개선사업계획의 확정
- 24. 「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」 제11조 또는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
- 25. 「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
- 26. 「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증 또는 같은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
- 27. 「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·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·변경 또는 승인
- 28. 「도로법」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
- 29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의 인가
- 30. 「도시철도법」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
- 31. 「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
- 32. 「동·서·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」 제14조에 따른 실시계 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은 경우

- 33. 「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
- 34. 「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법률」 제16조에 따른 개발사업 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
- 35. 「문학진흥법」 제22조에 따른 사립문학관 설립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
- 36. 「문화산업진흥 기본법」 제25조제4항에 따른 문화산업단지조성계 획의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
- 37.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따른 공사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
- 38. 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른 설치승인 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인가
- 39.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립 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
- 40. 「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2항에 따른 조성 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고시
- 41. 「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3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
- 42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17조, 제17조의2, 제18조, 제 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
- 43.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제1항에 따른

공장설립등의 승인

- 44. 「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17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
- 45. 「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른 실 시계획의 수립·변경 또는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공사의 시행허 가
- 46. 「소하천정비법」 제8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・ 변경의 공고 또는 같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비허가
- 47. 「송유관 안전관리법」 제3조제1항 본문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
- 48. 「수도법」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
- 49. 「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국립수목원조성계획의 고시, 같은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
- 50. 「수자원의 조사·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제3항 및 제 4항에 따른 설치계획의 고시 또는 변경고시
- 51. 「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같은 법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
- 52. 「식품산업진흥법」 제19조의3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

- 53. 「신항만건설촉진법」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
- 54. 「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·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」 제2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
- 55. 「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32조에 따른 조성 사업의 시행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은 경우
- 56. 「어촌·어항법」 제7조제5항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의 수립·변경의 고시
- 57. 「어촌특화발전지원특별법」에 따른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수립·변경
- 58. 「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
- 59. 「연안관리법」 제25조제4항에 따른 정비실시계획의 고시
- 60. 「영산강·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4 조의3에 따른 시행계획의 고시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수질 개선사업계획의 승인
- 61. 「자연공원법」에 따른 공원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
- 62.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·변 경의 공고
- 63. 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른 자전거도로 노 선의 지정·고시

- 64. 「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」 제10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
- 65. 「저수지·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제4항 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의 승인
- 66. 「전원개발촉진법」 제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
- 67. 「접경지역지원특별법」 제1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계 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
- 68. 「주택법」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
- 69. 「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」 제11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
- 70.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
- 71. 「중소기업창업지원법」 제3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
- 72. 「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」 제8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
- 73. 「집단에너지사업법」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
- 74. 「청소년활동진흥법」 제11조제3항에 따른 수련시설의 허가
- 75.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제1항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
- 76. 「초지법」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
- 77. 「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」 제1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
- 78. 「택지개발촉진법」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또는 승인

- 79.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 11조의3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공고
- 80. 「하수도법」 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시,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에 따른 인가 또는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
- 81. 「하천법」 제27조에 따른 하천공사시행계획의 수립·고시 또는 같은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
- 82. 「학교시설사업 촉진법」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·변경 승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협의
- 83. 「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 의3에 따른 시행계획의 고시 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수질개 선사업계획의 승인
- 84. 「한국가스공사법」 제16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
- 85. 「한국수자원공사법」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
- 86. 「항만공사법」 제2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
- 87. 「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」 제28조제 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
- 88. 「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
- 89.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46조의3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건설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

#### [별표 2]

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경우(제38조 제6항제4호 관련)

- 1. 「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」 제1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
- 2. 「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
- 3. 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15조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
- 4. 「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17조의2에 따른 주민사업으로 설치되는 공용·공공용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
- 5.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30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
- 6. 「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공용·공공용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시설
- 7. 「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」 제68조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입주업체
- 8. 「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의4제1항에 따른 국제회의 복합지구의 국제회의시설 및 국제회의집적시설
- 9. 「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10조에 따른 이전사업 시행자
- 10. 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」 제96조

제2항에 따른 규제자유특구 내 규제자유특구사업자

- 11. 「기업도시개발 특별법」 제25조제2항 개발구역에서 시행되는 기업 도시 조성사업
- 12. 「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4 0조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
- 13. 「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」 제17조에 따른 사업시행자
- 14. 「농업협동조합법」 제8조에 따른 조합등, 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 회사·농협금융지주회사·농협은행·농협생명보험·농협손해보험의 업무와 재산
- 15. 「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에 따른 대중 교통시설 중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 차터미널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공영차고지
- 16. 「도시개발법」 제7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
- 17.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31조제2항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
- 18. 「동·서·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」 제32조에 따른 사업시행 자
- 19. 「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

- 20. 「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른 무역거래기반시 설을 설치하는 자
- 21. 「문화산업진흥 기본법」 제27조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단지 사업시행자
- 22.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8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원활한 개발 및 입주기업체의 유치를 위한 경우
- 23.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집적시설
- 24.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 제56조제1항에 따른 사업예정 지역에 있는 농지 또는 산지의 전용이 필요한 경우의 사업시행자
- 25. 「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44조에 따른 산림복지단지 조성 사업
- 26. 「산림조합법」 제8조에 따른 조합등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
- 27. 「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」 제16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 단지
- 28.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의2제6항에 따른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에서 지식기반산업을 운영하는 기업 및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산업집적기반시설
- 29. 「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44조에 따른 새만금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30. 「서해 5도 지원 특별법」 제9조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

- 31.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 제8조에 따른 조합등, 중앙회 및 수협은행의 업무 및 재산
- 32. 「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·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」 제52조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
- 33. 「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14조제2항에 따른 특구개 발사업의 시행자
- 34. 「전시산업발전법」 제24조에 따른 전시시설을 설치 · 운영하는 자
- 35. 「접경지역 지원 특별법」 제13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
- 36.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5 6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37. 「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」 제7조에 따른 주한미군시설사업시행자, 제20조에 따른 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자
- 38. 「중소기업은행법」 제50조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의 재산과 업무
- 39.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62조의10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이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・중축 또는 이전하려는 경우
- 40.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창

업자

- 41. 「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1조제2항에 따른 시행자
- 42. 「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」 제4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
- 43 「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에 따른 해양치유지구 조성사업
- 44. 「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48조제2항에 따른 공공 기관의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5. 「협동조합기본법」 제99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과 재산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(정의) ------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• 2. (생략) 1. • 2. (현행과 같음) 3. "농업법인"이란 「농어업경」 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률」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 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 -----농업인이 출자한 출자액의 합계가 그 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 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의 2 을 말한다. 분의 1을 초과하며 농업회사 법인을 대표하는 자가 농업인 이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<u>의 2</u>-----4. ~ 7. (생 략) 4. ~ 7. (현행과 같음) 제4조(국가 등의 의무) ① 국가와 제4조(국가 등의 의무) ① ------지방자치단체는 「농업・농촌 지방자치단체는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이 구현되도록 농지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7조에 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 따른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 하여야 한다. <후단 신설>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농지를 확보 및 유지하여야 하고, 농지 에-----

② (생략)

제6조(농지 소유 제한) ① (생 략)
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 다.
- 1. 2. (생략)
- 3. 주말ㆍ체험영농(농업인이 아 | <삭 제> 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 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 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 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 다. 이하 같다)을 하려고 농 지를 소유하는 경우
- 4. ~ 10. (생략)
- ③ ④ (생 략)
- (생 략)
  - ③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<삭 제> 사람은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

					0]	경우
<u>농</u> 지	기의	확보	및	유지	등에	필요
<u>한</u>	사형	항은	대통	통령령	으로	정한
<u>다.</u>						

- ② (현행과 같음)
- 제6조(농지 소유 제한) ① (현행 과 같음)
  - (2) -----

1. · 2. (현행과 같음)

4. ~ 10. (현행과 같음) ③ • ④ (현행과 같음) 제7조(농지 소유 상한) ①・② 제7조(농지 소유 상한) ①・② (현행과 같음)

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.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.

④ (생략)

제8조(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) 저

①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 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(구 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,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 만을 말한다), 구청장(도농 복 합 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), 읍장 또는 면장(이하 "시·구·읍·면의 장"이라 한 다)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 다.

 1. 제6조제2항제1호·제4호·제
 1. 제6조제2항제1호·제6호·제

 6호·제8호 또는 제10호(같은
 8호 또는 제10호(같은 호 바

④ (현행과 같음)
제8조(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)
①
- <u>발급받아야 하며, 시・구・읍</u>
•면의 장은 제50조의2제1항에
따른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
<u> 거쳐야 한다</u>
1 게Cス게9하게1중 . 게C중 . 게

호 바목은 제외한다)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

- 2. ~ 3. (생략)
- ②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·구·읍·면의 장에게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제6조제 2항제2호·제3호·제7호·제9호·제9호의2 또는 제10호바목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. 1. ~ 3. (생략)
- ③·④ (생 략) <신 설>

목은 제외한다)에 따라 농지
를 취득하는 경우
2. ~ 3. (현행과 같음)
②
제6조제2항제
 2ই
· 1. ~ 3. (현행과 같음)
③·④ (현행과 같음)
세8조의3(농업경영계획서 준수
및 변경) ① 농업경영계획서를

제출하여 농지를 취득한 자는

그 계획서를 준수하여 해당 농

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여야

하며, 농지를 분할하여 처분하

② 농업경영계획을 변경하고자

하는 자는 농업경영변경계획서

여서는 아니 된다.

<신 설>

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·구·읍·면의 장에 게 신고하여야 한다.

- ③ 시·구·읍·면장은 제2항 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농업경영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.
- 제8조의4(상속 농지의 관리) ①
 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상속
  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는 상속
 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
  터 6개월 이내에 제8조제1항에
 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
  받아야 한다. 다만, 피상속인이
  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
  경우에는 그 기간을 9개월로
  한다.
  - ② 제1항의 기간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 는 그들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경우에 한정하며, 그 지정되거나 선임 되는 날부터 계산한다.
  - ③ 제1항의 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

<신 설>

<신 설>

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 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 계를 농지 소재지 관할 시·구 ·읍·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8조의5(금지행위)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- 1. 농업법인의 설립 및 해산의 반복을 통하여 「통계법」 제 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행 위
- 2. 제6조에 따른 농지 소유 제한이나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하도록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또는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

제9조의2(농지 처분 제한) 제8조 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외에는 취득한 날 제10조(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 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) ① 농 지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 내에 해당 농지(제6호의 경우 에는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 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 한다)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 이 아닌 자에게 처분하여야 한 다.

- 1. ~ 3. (생략)
- 4.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농

   지를 취득한 자가 자연재해・

   농지개량・질병 등 대통령령

   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

	<u>부</u>	터	31 <u>.</u>	년	동	안	하	당	·	テス	를	처
	분	하	겨기	너는	<u> </u>	o}1	<u> </u>	<u>]</u> [	<u>}.</u>			
	<u>1.</u>	Γ	병	역	법_	ه ا	1]	따	라	징	집	또
	ĭ	=	소	집	된	경	우					
	<u>2.</u>	농	업	법	ဉ် င		청	산	중	인	경	우
	<u>3.</u>	질	병	,	취호	함,	선	거	에	띠	·른	공
	2	딕	취	임,	_	1	밖	케	대	통i	령링	형으
	į	<u> </u>	정	하.	느	사	유	로	뇽	-지	를	계
	<u></u>	누ㅎ	ll 스	] :	소 <del>(</del>	유 항	<b>ト</b> フ	) (	거리	1운	- 7 <del>5</del>	경우
제	10	조(	농	업	경역	영ㅇ	1)	o`	용	하.	ス	아
	니	하	늗	농	ス	팅	의	3	처분	<u>-</u> )	1	

1. ~ 3. (현행과 같음) <삭 제> 이 그 농지를 주말·체험영농 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고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

5. ~ 8. (생략)

② (생략)

- 제12조(처분명령의 유예) ① 시장 (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 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 다)·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0 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무 기간 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처 분의무 기간이 지난 날부터 3 년간 제11조제1항에 따른 처분 명령을 직권으로 유예할 수 있 다.
  - 해당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 영에 이용하는 경우
  - 2. (생략)
  - ②・③ (생 략)

제14조(농지이용계획의 수립) ① ~ ③ (생 략)

④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 또

5. ~ 8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제12조(처분명령의 유예) ①
1. <u>농업경영계획서에 따라 해당</u>
 2. (현행과 같음)
2. (현정되 (현정과 같음)
제14조(농지이용계획의 수립) ①
~ ③ (현행과 같음)
<b>4</b>

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이용계 획이 확정되면 농지이용계획대 로 농지가 적정하게 이용되고 개발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, 필요한 투자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. <후단 신설>

⑤ (생략)

제22조(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) 저

- ① (생 략)
- ② <u>「농어촌정비법」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</u> 된 농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분할할 수 없다.

1. ~ 4. (생 략) <u><신 설></u>

<u>이 경우 특별시장·광역시</u>
<u>장 또는 시장·군수는 「국토의</u>
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
2조제4호에 따른 도시·군관리
계획에 농지이용계획을 반영하
여야 한다.
⑤ (현행과 같음)
세22조(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)
① (현행과 같음)
② <u>농지는</u>
<u>.</u>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제22조의2(과징금) ① 농림축산식 품부장관은 농업법인이 농지를 이용하여 부동산업 또는 임대 업을 영위한 경우 그 양도 차 액 또는 임대료를 초과하지 아 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 제23조(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 제대차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다.

- 1. ~ 4. (생 략)
- 5. 제6조제1항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<u>농지를 주말·체험영농</u>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, 또는 주말·체험영농을 하려는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(業)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(業)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

과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
액 및 징수방법, 그 밖에 필요
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
<u>다.</u>
]23조(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
대차) ①
1. ~ 4. (현행과 같음)
5
<u>농지를 주말·체험영농</u>
(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
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
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
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
는 것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
<u>하려는</u>
6

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 는 경우

7. ~ 9. (생략)

② (생략)

제34조(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)

- 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<u>다</u>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한다.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  - 1. <u>다른</u>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
  - 2. ~ 5. (생 략) ② (생 략) <신 설>

7. ~ 9. (현행과 같음)
7. 5. (현정의 끝리) ② (현행과 같음)
제34조(농지의 전용허가・협의)
①
당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
자경하여야 하고 다음
<u></u>
· 
· 1. <u>별표 1에 규정된</u>
2. ~ 5. (현행과 같음)
② (현행과 같음)
제34조의2(농지전용허가의제에
관한 특례의 제한) ① 농지전

제35조(농지전용신고) ① 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·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.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- 1. ~ 3. (생략)
- ②・③ (생 략)
- 제38조(농지보전부담금) ① ~ ⑤ (생 략)
  -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.
  - 1. ~ 3. (생략)

	용허가의 의제는 이 법 또는
	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별표
	1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
	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.
	②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
	별표 1은 이 법 외의 다른 법
	률로 개정할 수 없다.
제	35조(농지전용신고) ①
	<u>해당 농지를 3년 이상</u>
	자경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-
	,
	,
	1. ~ 3. (현행과 같음)
ᆀ	<ul><li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li><li>38조(농지보전부담금) ① ~ ⑤</li></ul>
^II	(현행과 같음)
	(234 をも) ⑥
	· 1. ~ 3. (현행과 같음)

<신 설>

⑦ ~ ⑤ (생 략) <u><신 설></u>

<u><신</u> 설> <신 설> 

 4.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서

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을 정

 하는 경우

(7) ~ (15) (현행과 같음)

제38조의2(농지보전부담금 면제 에 관한 특례의 제한) ① 농지 보전부담금의 면제는 이 법 또는 제38조제6항제4호에 따른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.

② 제38조제6항제4호에 따른 별표 2는 이 법 외의 다른 법 률로 개정할 수 없다.

제4절 농지관리위원회

제50조의2(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) ① 농지의 소유·이용 및 보전 등에 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(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,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)·구(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)·읍 또는 면에 농지관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역

<신 설>

<신 설>

의 특성과 농지분포의 실태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로 인접한 2이상의 시·구·읍 또는 면에 둘이상의 위원회를 두게 할 수있다.

제50조의3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- ② 위원 과반수는 관할구역에 서 5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구성한다.
-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.
- 제50조의4(위원회의 업무) 위원회 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한다.
  - 1. 농지 소유·이용 및 보전 등 에 관한 실태조사
  - 2.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의 심사
  - 3. 제34조, 제35조, 제36조 및 제36조의2에 따른 허가 신청

제54조(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제54조(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, 해당하는 자의 농지의 소유・ 거래 · 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 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 속 공무원에게 그 실태를 검사 하거나 조사하게 할 수 있다.

- 1. 농업법인
- 2. 농지의 위탁경영자
- 3. 농지의 임대인
- 4. 농지의 사용대주(使用貸主)
- 5.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
- 6.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사업시 행자
- 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.
-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검사 | ③ -----

또는 신고에 대한 심사 4. 그 밖에 농지의 관리를 위하 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조사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·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 은 모든 농지에 대하여 농지의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소유, 거래, 이용 및 보전 등에 관한 필지별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시행하여 야 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0 조의2제1항에 따른 농지관리위 원회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.
- •조사 및 증표에 관하여 필요 | 조사의 주기, 방법 및 절차, 그

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

제57조(벌칙) ① <u>농업진흥지역의</u> 농지를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 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 를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 가에 따른 토지가액(土地價額) [이하 "토지가액"이라 한다]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	<u>밖</u>	케	필.	요현	나 ㅅ	)항-	은	대부	통령	령	<u>0</u>
	로-										
제	573	조(	벌	칙)	1	<u>다</u>	<u>)</u>	각	호	븨	어
	<u>느</u>	히	-나	에	해대	당하	는				

- 1.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제34 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
- 2. 제6조에 따른 농지 소유 제한이나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

- ②·③ (생 략)
- 제58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 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.
  - 1. 제6조에 따른 농지 소유 제 한이나 제7조에 따른 농지 소 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 명을 발급받은 자

<신 설>

2. ~ 4. (생략)

제59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제59조(벌칙) -----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 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.

<신 설>

	2	• ③	) (현	행과	같음	을)	
제	583	조(기	벌칙)				 
	<스	}	제>				

- 1의2. 제8조의5제1호를 위반하 여 농업법인의 설립 및 해산 의 반복을 통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행위
- 2. ~ 4. (현행과 같음)

1. 제8조의5제2호를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하도록 권유・중 개하거나 그 행위가 행하여지 는 업소를 광고하는 행위를 한 자

#### <신 설>

### <u>1.·2.</u> (생 략)

제60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- 1. (생략)
- 2.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유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한 자
- 3. (생략)

제62조(이행강제금) ① 시장(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 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·군 수 또는 구청장은 제11조제1항 (제12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라 처분명령을 받은 후 제11조제2항에 따라 매수를 청구하여 협의 중인 경 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 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한 <u>자</u>에게 해당 농지의 <u>토지가</u> 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

2.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
유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
용하게 한 자
<u>3.·4.</u> (현행 제1호 및 제2호와
같음)
제60조(벌칙)
1. (현행과 같음)
<삭 제>
3. (현행과 같음)
제62조(이행강제금) ①
자 및
제42조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명
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